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8일, 김남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희의원)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신은호 전문위원)

개정안은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인구구조, 재정 여건, 복지 수요 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지역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해지고,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이의 괴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최근의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은 고용 형태의 다변화, 경기 변동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이고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